

원일교회 청년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본회는 원일교회 청년회라 칭한다.

제2조

본회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한 기관으로서 청년들로 하여금 이 기관을 통한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선교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사람 된 기독교인으로서의 품격을 형성하게 하며, 안으로 교회를 위하여, 밖으로 국가 및 사회를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생동하는 기독 청년이 되도록 돕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회는 원일 교회 내에 둔다.

제2장 자격 및 권리와 의무

제4조 자격

1. 본회 정회원의 자격은 본 교회 교인으로서 19세 이상 40세 이하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가 정하는 등록카드를 제출한 자로 한다.
2. 본회의 준회원의 자격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임원회의 동의를 얻은 자로 한다.

제5조 권리와 의무

1. 본회 정회원의 권리는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본회 정회원 및 준회원은 본회 결의 사항의 이행, 예배 및 집회 참석, 회칙 준수,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

제3장 조직

제6조 임원의 구성

1. 본회 임원은 회장 1인, 총무 1인, 회계 1인, 서기 1인으로 구성되는 임원단과 부장 및 부감으로 한다.
2. 임원은 정기 총회 때 선출한다.

제7조 임원의 직무

임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되고 일체 회무를 총괄하며, 각 회원의 동정과 그들의 교회생활을 돕는다.
2. 총무: 각 부의 회무를 일괄적으로 총괄하며, 회장의 유고시 직무를 대리한다.
3. 회계: 본회의 재정 사무 일체를 담당한다.
4. 서기: 본회의 서무 행정 일체를 담당한다.

제8조 부설 조직

1. 본회는 필요에 따라 예배팀, 임시-수련회 준비팀 등의 부설 조직을 둘 수 있다.
2. 필요 시 본회 부설 조직의 팀장은 임원단에서 임명한다.

제4장 선거 및 입후보의 결정

제9조 피선거권

본 회의 피선거권은 본 회의 정회원 중 아래 항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주어진다.

1. 회장과 총무는 본 회 정회원 중 본 교회의 세례교인(입교인)으로서 1년 이상 출석한 자로 한다.
2. 회계, 서기는 본 회 정회원으로서 6개월 이상 출석한 자로 한다.

제10조 선거권

본 회의 선거권은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주어진다.

제11조 임원선출

1. 임원 입후보는 본 회의 회원 중 1명의 동의와 1명의 재청으로 결정된다.
2. 본 회 임원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한다.
3. (의결정족수) 임원은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받은 자를 선출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 최다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행하여 그 중 최다 득표자로 선출한다.
4. 단독 입후보일 경우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음으로써 선출한다.

제5장 임기

제12조 임기

본 회 임원단의 임기는 1년(당當해 12월 ~ 다음 해 11월)으로 하며, 정기 총회의 투표를 통한 동일 직책의 연임을 인정한다.

제13조 결원의 충원과 임기

본 회 임원 중 결원이 있을 경우 임원단의 결정에 의해 신 임원을 선출하고 신 임원의 임기는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6장 집 회

제14조 집회

본 회의 회무와 집회는 다음과 같다.

1. 정기 총회: 매년 11월 첫째 주일에 회장이 소집하며 임원 개선, 회칙 수정, 예산 보고 및 심의, 사업 보고 및 기타 일반 회무를 처리한다.
2. 임시 총회: 임원 3명 이상 혹은 회원 1/4이상의 요구 시 회장이 소집하며 필요한 회무를 처리한다.
3. 개회성수: (의사정족수) 본 회의 정기 총회는 당일 출석 인원 중 본 회의 회원인 자의 과반수가 모였을 때 개회될 수 있다.
4. 본 회의 총회 일시 등과 관련된 공지는 최소한 1주 전에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
5. 월례회: 매달 1회씩 전 달의 제반 사항을 평가하고 새 달의 사업 계획을 설정한다.
6. 임원회: 필요 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7장 재정

제15조 본 회 재정은 교회의 청년부 예산과 회비 및 찬조금으로 한다.

제16조 본 회의 재정 지출은 교회의 청년부 부장과 회장의 동의 및 결재가 있어야 한다.

제17조 회계의 수지 결산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8장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회칙은 총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그 효력을 발휘한다.

제2조 본 회칙의 수정 및 제안은 3인 이상의 임원 혹은 1/4 이상 회원의 요구가 있을 시 제출한다.

제3조 본 회칙의 수정, 첨가, 삭제 등은 총회 참석 인원 중 과반수의 찬성(수정 ->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개정 2023.11.26.]

제4조 자연재해 및 불가항력으로 인해 대면하여 정기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통신수단을 통하여 총회를 진행할 수 있다.

제5조 자연재해 및 불가항력으로 인해 임원을 정상적으로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 회장과 회계를 우선적으로 선출하고 이후 [제5장 제16조]를 따른다.

제6조 본 회칙에 대해 미비한 부분은 본 회의 임원들과 결의 또는 통상적인 회의 규칙을 따른다.

2021년 12월 12일 회칙 일부 개정

2023년 11월 26일 회칙 일부 개정